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12
----------	------

2024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에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직업체험 등 일자리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일원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위기 십대여성의 교육과 자립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3(신림동)
- 시설규모 : 550.2m²(지상 1~5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교실2, 작업장2, 공연장, 일시보호실, 사무실 등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2. ~ 2028. 1. 1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647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학력취득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일자리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 축제 등

3)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 제출 개요

- 동 동의안은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5.1.11)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력취득을 위한 수준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등
 -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축제 등

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가.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현황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위기십대 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4개소를 위탁·운영중임²⁾.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십대여성"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원시설 4개소 중 산부인과·치과·정신과 등 전문의 의료 지원 중심의 십대 여성건강센터³⁾를 제외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은 아래와 같음.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 여성 지원시설 현황>

구 분	십대 여성일시지원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위 치	동작구 상도로152-1	관악구 관천로113	강북구 도봉로 98길
운영법인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단체)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사)청소년내길찾기
시설규모	120㎡	550.2㎡	253.6㎡
최초위탁	2012.8	2009.8	2010.5
센터기능	상담, 아웃리치, 일시보호 긴급구조	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교육, 인턴십	상담,아웃리치,일시보호 교육, 인턴십
주요사업	일시보호 등 일시생활지원, 상담 및 귀가지원, 지원시설연계	학력취득(검정고시), 인턴십활동, 취업연계	학력취득(검정고시), 인턴십활동, 취업연계
운영인력	총6명	총7명	총5명
예산액(24년)	379백만원	647백만원	449백만원
비고	-	여성가족부 대안교육 위탁기관	-

- 이 중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최초 위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 재계약, 재위탁을 거쳐 ‘새날을여는청소년 쉼터’에서 계속 수탁 중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십대여성건강센터]

- 위탁내용: 시립 청소년건강센터 운영 및 건물관리
- 주요업무: 산부인과·치과·정신과 등 전문의 진료, 기초검진. 자궁경부암 등 예방접종, 종합심리검사 등 심리치료 지원, 건강생활총 지원 등
- 위탁기관명: (사)막달레나공동체

<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시 설 명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위탁법인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위탁기간	2022.1.12.~2025.1.11.(3년)
운영인력	총7명
소요예산('24년)	647,930천원 (국비87,676천원,시비560,254천원)
협약서 상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취득을 위한 수준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연계 - 진로교육 및 상담, 심리정서프로그램, 사례관리, 찾아가는 거리학교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09.8.19. ~ 2010.2.28.(6개월,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2차 : 2010.3.24. ~ 2011.2.28.(11개월,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3차 : 2011.3.21. ~ 2012.1.10.(10개월,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4차 : 2012.1.12. ~ 2013.1.11.(1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5차 : 2013.1.12. ~ 2016.1.11.(3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6차 : 2016.1.12. ~ 2019.1.11.(3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7차 : 2019.1.12. ~ 2022.1.11.(3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8차 : 2022.1.12. ~ 2024.1.11.(3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특히 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⁴⁾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⁵⁾’으로 지정되어 여성가족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개요>

구 분	내 용
설치·운영권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설치기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소면적 99제곱미터 이상
설치목적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성매매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학업 지속 지원 또는 자립·자활 역량강화
사업대상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청소년지원시설 대상과 동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교육 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 지원 - 심신건강회복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능 강화교육 지원 - 대안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자활교육지원 - 일반교과과목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국고지원	교사 인건비, 자활교육 운영비, 프로그램비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 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등에 지도·감독하여야 함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614p

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동 센터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에6) 따른 위탁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에7) 의거하여 시장의 사무에도 해당됨.

6)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이에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의 위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 한편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⁸⁾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⁹⁾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¹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¹¹⁾에 따라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로 대체함.
- 규칙에 따라 제출된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는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여 법적 요건에는 부합하나,
- 평가방식이 시설 자체 평가 후 면담 등의 질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계량적 성과지표, 조직운영 효율성과 사업 효과 등 사업 운영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9) [’24. 2. 14. 조직담당관-1682]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대상을 전체 사무로 확대(5억 이상 → 전체)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중 ’24.8월 ~ ’25.7월 종료 사무 중 5억 미만 사무(21개)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상당소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당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반에 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되는 바임.

< 2022년 여성가족부_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평가결과 >

구분	내 용	
개요	평가대상	21년.12.31년 기준, 1년 이상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중인 시설 5개 유형, 93개소
	평가내용 (4개 영역)	① 시설환경 및 안전도 ②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③ 서비스 및 인권보호 ④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평가
	평가방식	시설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 및 면담
결과	평가등급	(90점 이상) A
	종합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시설장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원함 - 위기십대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모델을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노력이 보임 - 전반적으로 문서,지침 관리와 기관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임. 다만 내부규정 및 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 있음.

- 「2024년 제5,6차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위탁 심의 결과는 ‘적정’ 이었으나, 늘푸른교육센터의 기능 중복문제와 각 시설간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사항 개선을 권고 받음.
-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평가 후의 ‘민간 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에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의 3년간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실적 >

(단위 : 명/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6
학업 지원	입학인원	20(30)	19(30)	8(10)
	학력취득	8(13)	9(13)	4(5)
일자리 프로그램	일자리 프로그램(건)	967(420)	1,248(420)	469(780)
	진로탐색·교육(건)	206(147)	552(162)	469(780)
	직업체험축제 참여	27(100)	276(100)	예정
심리정서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4,910(3,284)	2,858(1,845)	1,594(3,284)
	치유회복 프로그램(건)	25(36)	25(15)	32(53)
	일시생활지원(건)	167(360)	669(360)	608(840)

※ 실적건수 옆 괄호는 목표값을 의미함.

- 더욱이 상담, 아웃리치, 일시보호의 기능이 청소년시설(쉼터 등)과 유사 기능 수행으로 소관부서 이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통합을 지속적으로 권고받았으며, 기존 오프라인 아웃리치 중심 운영 방식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상의 대상자 참여와 확보의 문제와 한계점이 제기되었음.

<2024년 제5,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결과
시립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사)청소년내길찾기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3년 (’25.1.12.~’28.1.11.)	적정 (권고)
[권고] 의견 - 일시지원센터와 늘푸른교육센터의 기능 중복문제 검토 (아웃리치, 상담 등) - 각 시설 간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					

3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지원 및 일자리 프로그램, 진로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지원을 통해 성매매 유입 방지 및 자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 그 위탁사무의 내용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센터가 ‘십대일시여성지원센터’ 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점(12km이내)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간 통·폐합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성매수·성매매 피해자 환경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아웃리치 방식의 사업방식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12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직업체험 등 일자리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나. 위기 십대여성의 교육과 자립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3(신림동)
- 시설규모 : 550.2㎡(지상 1~5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교실2, 작업장2, 공연장, 일시보호실, 사무실 등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2. ~ 2028. 1. 1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647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학력취득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 축제 등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